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추진 지침

2017. 2.



|| 목 차 ||

계약제도 적극 활용

- ① 긴급입찰 1
- ② 선금 집행 활성화 3
- 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기간 단축 4

세출예산 신속 집행

- ④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5
- 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등 .. 6
-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7
- ⑦ 일반운영비 집중 집행 8

신속집행 추진 지원

- ⑧ 신속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8
- ⑨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9
- ⑩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포상10

1 긴급입찰

□ 제도개요

- 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신속집행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광고기간

일반입찰	긴급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억원미만 : 7일○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50억원이상 : 30일○ 고시금액 이상 : 4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의 수의계약 안내공고 :3일이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긴급입찰 주요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공고입찰의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조치사항

- 2017년도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5일 → 3일(근무일 기준)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선금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 조치사항

- 선금 지급률 최대한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사고 이월 등의 경우 연말 선금반환 규정 폐지('16.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고, 다만,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제도개요

- (일상감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 문제해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일상감사 실시 지침)
- (계약심사)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
 -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 제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74조)

구분	심사대상 사업	
	시·도	시·군·구
원가심사	공사: 3억 이상(종합공사 5억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공사: 2억 이상(종합공사 3억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20억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 시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10%이상 증액 시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외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입찰공사,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물품 제조·구매
 - ※ 심사서류 제출(7일~15일 내) → 서류 보완(7일 내) → 적격심사(7일 내)
→ 심사 연장(3일 내)

□ 조치사항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3일 이내

4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 운영배경

-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9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운영(재정정책과, 공문 통보)
- 관련법령(지방재정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적 측면에서 결정, 신속집행 목표율 특히, 1/4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 * 1/4분기 26%(광역 27%, 기초·공기업 25%)

<자치단체장은 아래의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재정법 §45)>

-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 국비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집행 가능(기재부, 예산 및 기금 운용지침)

□ 한시적 운영

-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재정정책과-288(2017.1.18.))

(공문내용)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2017.6.30까지 한시적 운영)

□ 조치사항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최대한 활용
- 단년도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 단계적으로 계약

* 단년도 차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

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신속한 예산 배정 및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 주요내용

- 2017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7.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시행 : '17. 2. 23.

□ 조치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 상반기중 일괄 교부 조치
-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제도개요

○ 추진목적

- 계약이행의 대가 지급기간 단축을 통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및 신속집행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부득이한 경우는 대가 지급 5일 이내 연장
-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대가 지급

-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16. 2. 20)

- 지급절차 : 집행 품의 → 현금카드 사용 → 회계담당자에게 증빙 서류 제출 → 원인행위 → 사업자 계좌 확인 및 대금 지급

□ 조치사항

- 모든 대가는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적어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기성대가는 계약 후 또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7 일반운영비 집중 집행

□ 편성목 개요

- 물건비(200)의 일반운영비(201)* 중 사무관리비(201-01), 맞춤형 복지비(201-04), 공립대학 운영비(201-05)는 신속집행 대상
 - 신속집행 대상액 4.2조원, 목표액 2.3조원 해당
-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비, 공립대학운영비

□ 조치사항

- 상반기에 집중 집행
 - 복사용지 등 각종 소모품 일괄 구매, 맞춤형복지비 사용 독려
 - ※ 불필요한 비품 과다구입 등 비효율적 집행 지양

8 신속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 운영개요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구성(단장 : 지방재정세제실장), 자치단체별·회계별 집행상황 등 모니터링 및 지원사항 파악
 - 매월 1회 점검회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자치단체) 시·도 본청에서 관할 사업소 및 시·군·구(공기업 포함) 총괄, 지자체별 단장(부단체장) 주관으로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주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회의 등 집행 관리

□ 조치사항

- 행자부 주관, 전 지자체별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영상회의 등 활용
- 시·도(단장) 주관, 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수시 실시

9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 추진개요

- (개 념)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금고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보전
 - *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계획 참고(회계제도과-1012, 2017.2.24.)
- (필요성) 자치단체의 자금 확보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일시차입 이자지원 필요
 - 지방세가 주로 하반기에 부과·징수*되고 있는 반면, 신속집행에 필요한 자금수요는 상반기에 집중
 - * 지방세 부과시기 : 자동차세(1기 6월, 2기 12월), 재산세(1기 7월, 2기 9월) 등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2017. 1. 1. ~ 6.30.까지 신속집행을 위해 일시차입한 자금으로 인하여 2017. 8.31.까지 지출한 이자
- (지원기준) 차입금(원금) 이자의 2.5%까지 보전('16년 2.5%)
차입이자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이자금액
 - * (연도별) '16년(8개 54억, 2.5%), '15년(3개 43억, 2.5%), '14년(6개 36억, 3.5%), '13년(12개 177억, 3.5%), '12년(18개 188억, 3.5%~4.0%)
- (지원방법/시기)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활용 / 2017.10월~12월

□ 조치사항

-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 일시차입을 통한 신속집행 적극 추진
- 금고은행 등과 일시차입금 이자율 인하 협상 등 재정부담 완화
- 일시차입금은 일자리창출 등 신속집행 목적으로 효율적 사용

10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포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 평가시기 및 기준일 : 2회
 - 1/4분기(2017.1.1.~ 3.31) 평가 : 2017.3.31. 기준
 - 상반기(2017.1.1.~ 6.30) 평가 : 2017.6.30. 기준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03점)	비고
신속집행실적	집행률 *월별 집행률	70 (기초 75)	○ 1/4분기 평가 : 월별 가중치 없음 ○ 6월말 평가 : 월별 가중치* 부여 * 1~3월 20%, 4월 25%, 5월 25%, 6월 30% - 월별 목표액 대비 누계 집행액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률	15~25	○ 광역15(세종·제주25), 기초20
예산규모 가중치	신속집행 예산규모	5	5점 상한
광역·기초협력도	광역+기초 집행률	10	광역(세종, 제주 제외)

*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계획 참고(회계제도과-1012, 2017.2.24.)

□ 평가결과 포상

-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급(특별교부세)
 - (지급대상) 평가결과 대상·최우수·우수 기관별 차등 지급(2회)
 - (지급시기) 5월/8월
 - ※ 지급규모 추후 결정 통보('16.1분기 60개 기관 33억원, 상반기 64개 기관 35.7억원)
- 우수기관 및 개인 유공 포상
 - (훈 격) 행정자치부장관
 - (포상대상) 우수 지자체 및 공기업, 유공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포상시기) 5월/8월 ※ 포상규모는 추후 결정 통보